

● 제30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46)

2021. 9.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4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외 14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 정보 접근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은 없음.
-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편의시설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편의보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의 의무(안 제3조)로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시설주의 의무(안 제4조)로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안 제5조), 편의시설의 실태점검(안 제6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7조), 교육실시(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제2조(정의)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3조(시장의 의무)	제8조(교육 실시)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제10조(시행규칙)
	부 칙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의무(안 제3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4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편의시설의 실태점검(안 제5조~안 제6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주관기관¹⁾으로 하여금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및 교육 실시(안 제7조~안 제8조)

- 조례안 제7조에서는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정 비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의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1)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다만, 비용지원 대상자를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법정 비의무 시설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는 다중이용시설 등 구체적인 비용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그 외 규정(안 제9조~안 제10조)

- 조례안 제9조는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마. 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설주²⁾의 의무 및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주에만 해당되므로, 본 조례안 제7조를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하는 편의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될 수 있음.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집행부의견

-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간 상충 등 별도 쟁점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전술한 검토결과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시행규칙의 입법을 통해 지원의 범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면적기준 이하의 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민에게 수익적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 대상자를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조례안의 처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

□ 참고자료 :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며.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